

대구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307677 판결 [계약금 등 청구]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307677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2. 24 선고 2019가단570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지광

피고, 피항소인망 B의 소송수계인

1. C

2. D

3. E

4.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한

변론 종결2022. 4. 20.

판결 선고2022. 6. 17.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2. 24. 선고 2019가단5702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C는 11,733,330원, 피고 D, E, F은 각 7,822,2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

- 1)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망인은 수급인인 원고가 일을 완성하기 전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민법 제673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설령 망인에게 민법 제67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J에게 K 발전소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과 도서작성을 위임한 것은 피고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39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I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받은 개발행위허가는 G 토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고 I

토지는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결국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잘못 완료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거나 원고의 행위가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태천

판사김민지

판사박소영